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~9. (생략) <신설>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~9. (현행과 같음) <u>10. 주식, 집합투자증권등,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 단,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</u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</u>, 제19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~5. (생략) ③ (생략)	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</u>, 제19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~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~10. (생략)	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<u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 2.~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u>